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0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

2021. 11. 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수입위생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거나 체결 추진 예정에 따라 해당 협정 중 위생검역분야에서 요구하는 통상규범을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 축산물의 범위 확대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유사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나. 비대면 조사 시 현지조사 생략 요건 마련(안 제4조제2호)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출국 위생관리실태에 대해 비대면 조사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한 업무 수행 절차 개선(안 제5조 및 제7조 신설)

수입위생평가 진행과정에서의 국가간 위생관리의 동등성 검토 근거와 수출국 정부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상대국 요청시 수입위생평가 진행경과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72호(2021.10.1.~10.2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1-4368호, 2021.9.14.)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0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8호, '2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5]”를 “관련 별표 5”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2. 같은 축종에서 유래한 원료 식육으로 만든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 유지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사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함께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라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5]”를 각각 “별표 5”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인 경우

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동등성 검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5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 위생증명서 협의 시 수출국과 국내의 위생관리체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생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이하 “동등성”이라 한다)를 가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입위생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제15호”를 “별표 5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BSE”를 각각 “소해면상 뇌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품목”을 “국가 및 품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70호, 2021. 11. 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수입위생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5]에 따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유사 축산물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에 따라 수출국은 다음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함께 수입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삭 제</p> <p>3. ~ 8. (생 략)</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용을 요청한</p> | <p>제1조(목적) ----- ----- ----- 관련 별 표 5----- -----.</p> <p>제2조(유사 축산물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같은 축종에서 유래한 원료 식육으로 만든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p> <p>3. ~ 8. (현행과 같음)</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사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p> |

1. (생략)

2.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와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

3.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

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제5조(동등성 검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다른 수입위생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5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 위생증명서 협의 시 수출국과 국내의 위생 관리체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생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이하 “동등성”이라 한다)를 가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입위생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자문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제15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최초로 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 허용여부
2. BSE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제6조(자문 등) ① ----- 별표 5 제15호-----

1. ---- 소해면상뇌증 -----
2. 소해면상뇌증 -----

| | |
|--|---|
| <p>경우</p> <p>3.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u>국가/품목</u>의 수입허용 여부</p> <p>4.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u>제6조</u> (생략)</p> | <p>--</p> <p>3. ----- ---- <u>국가 및 품목</u>-----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7조(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의 통보)</u>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u></p> <p><u>제8조</u> (현행 제6조와 같음)</p> |
|--|---|